

산업안전 Q&A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에 관련하여 수직보호망 설치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래물 보호용 안전시설비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진동측정기구, 소음측정기구를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에 의거 수직보호망 설치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래물 보호용 안전시설비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1항 14호에 의거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정기준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 제15장(수직보호망)을 참조하고, 진동측정기와 소음측정기 구입비에 대하여는 동 장비가 기계·기구 등의 진동이나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민원해소용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명예산업안전관리자의 활동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 참여
- 사업장 산재예방계획수립에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에 입회
-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 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기타 산재예방에 대한 홍보, 계몽 등

Q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제1차 금속산업, 선박 건조 및 수산업, 토사석 채취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바,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함)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에 동법 제13조 규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공정시설에 대하여도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전체 공정(System)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해당 기계·기구 자체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서로 적용대상 및 검사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공정시설 내에 있는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정합니다.

지난 11월호 내용 중 “공사금액 20억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음)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